

도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사례(의견표명)

□ **민원 제목** :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선 요청

□ 신청 취지

- 신청인은 「2024년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」(이하 '지원사업'이라 한다)을 신청한 자로, 공고문에 대출이자 지원 기간이 최대 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
- 이는 전세, 월세 계약 기간 중 2년간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, 대출일로부터 5월 31일까지를 1년차로 정산하여 지원(신청인의 경우 1년차에 85일 지원)한다.
- 2년차는 동일하게 1년의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, 1년차는 전세·월세 대출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, 3년차 때 1년차 시 지원받지 못한 기간만큼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2023년부터 실시한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한정된 예산 범위 내,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
- 2023~2024년 사업 모집 공고문 및 지원 확정자 공고 등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기간(최대 2년)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음,
- 지원기간을 조정할 경우 기존에 만 2년간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,

- 코로나19 및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 확대 또는 신규 사업 신설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이 어려움이 따라
- 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 및 소급 적용 문제, 도 재정여건상 지원 기간 연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'27년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

□ 사실관계

가.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.

- (사업기간) 2023 ~ 2027년 ※ (신청) '23 ~ '26년 ⇨ (지급) '23 ~ '27년
- (사업규모) 연 1,500가구
- (사업비) 5년간 총 125억 원(도 62.5, 시군 62.5)
- (지원대상)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
- (지원내용) 신혼부부 가구 전·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
(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, 최대 연 3.0%, 최대 2년)
- (지원횟수)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
- (신청기간) 2024. 6. 1. ~ 8. 31. ※ 2024년 기준
- (지급방법) 연 1회 지급(12개월분 상환이자 정산지원) ※ 2024년 기준
 - 1년차: 2023. 6. 1 ~ 2024. 5. 31.까지의 이자를 2024. 10. ~ 12. 중 지원
 - 2년차: 2024. 6. 1. ~ 2025. 5. 31.까지의 이자를 2025. 10. ~ 12. 중 지원

나. 타 시·도의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강 원	서 울	부 산	대 구	경 북
사업명	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	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	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	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	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
대상자	신혼부부 (혼인신고 7년이내)	신혼부부 (혼인신고 7년이내, 6개월 내 결혼 예정)	신혼부부 (혼인신고 7년이내, 3개월 내 결혼 예정)	신혼부부 (혼인신고 7년이내, 3개월 내 결혼 예정)	신혼부부 (혼인신고 7년이내, 3개월 내 결혼 예정)
연소득	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	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	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	부부합산 연소득 7.5천만 원 이하	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
대상 주택	보증금 3억 원 이하	보증금 7억 원 이하	보증금 4억 원 이하	보증금 3억 원 이하	보증금 5억 원 이하
대출금	최대 1억 원	최대 3억 원	최대 2억 원	최대 2억 원	최대 2억 원
이자 지원	최대 연 3.0%	최대 연 4.5% *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.0% *추가 최대 연 1.5% (예비부부, 다자녀 등)	최대 연 2.0%	최대 연 1.6%	최대 연 2.5% *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1.5% *추가 최대 연 1.0% (자녀 수)
지원 기간	최대 2년	최대 10년 (기본 2년 + 연장 2년 + 자녀 수 증가 6년)	최대 10년 (최대 2년 + 대출 기간 내 자녀 임신·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)	최대 6년 (기본 2년 + 2회 연장)	최대 6년 (최대 2년 + 자녀 수에 따라 2회 연장)
정산 기간	대출일로부터 다음연도 5. 31.까지	선정일로부터 2년	선정일로부터 2년	선정일로부터 2년 (과거 1년 지원가능)	선정일로부터 6개월(4회 신청)
지급 방법	12개월분 상환이자 정산지원	매달 이자 납부 시 정산	매달 이자 납부 시 정산	6개월, 12개월분 상환이자 정산지원	6개월 상환이자 정산지원

다. 타 시·도의 경우, 지원사업에 대해 별도의 정산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일로부터 최대 24개월 동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.

라. 신청인의 지원 및 대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지원 신청일) 2024. 6. 16.
- (총 대출기간) 2024. 3. 8. ~ 2026. 3. 8.(2년 1일)
 - 1년차 실 정산기간 2024. 3. 8. ~ 2024. 5. 31.(85일)
 - 2년차 실 정산기간 2024. 6. 1. ~ 2025. 5. 31.(1년)
- (총 지원기간) 1년 85일(약 1년 3개월)

마. 신청인이 2025년에 신청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- (1년차 실 정산기간) 2024. 6. 1. ~ 2025. 5. 31.(1년)
- (2년차 실 정산기간) 2025. 6. 1. ~ 2026. 3. 8.(281일)
- (총 지원기간) 1년 281일(약 1년 9개월)

□ 판단 및 결론

- 피신청인은 지원사업 공고 시 지원기간을 최대 2년으로 명시하였으나, 공고문 붙임2 '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FAQ'에는 대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대출일로부터 2024. 5. 31.까지의 상환이자에 대하여 지원됨을 명시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약 1년 3개월간 대출이자를 지원한 것은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신청인의 대출 시점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정한 일률적인 정산기간 산정 방식은 개별 신청인 간 대출이자 지원 기간에 차이를 초래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

- 따라서,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타 시·도와 같이 정산기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대출 시점에 따라 유동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,
- 1년차에 미수령한 지원금을 3년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향후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함.
-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방식이 위법·부당하지는 않으나, 대출 시점에 따라 신청자 간 지원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,
-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유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취와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 표명하기로 의결함.